2015년도 제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5년 1월 29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하성근 위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없 음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이 흥 모 부총재보 김 민 호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조 정 환 거시건전성분석국장 윤 면 식 통화정책국장

홍 승 제 국제국장 전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박 성 준 공보실장 허 진 호 금융시장부장

문 한 근 의사관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3호 - 「공개시장조작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6호, 제68조에 의거 당행 환매 조건부증권매입의 증거금률이 매입유가증권의 잔존만기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차 이 등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증거금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 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2015년 1월 21일 위원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RP매입 증거금률이 대상증권의 실제 가격변동성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합리화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취지에 대해서 찬성하나, 잔존만기 10 년 초과 국채에 적용되는 증거금률이 기존의 105%에서 107%로 높아짐에 따라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장기채 매입유인이 감소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물 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당행 RP매매 대상기관인 은행과 증권사 등의 경우에는 보유채권의 잔존만기가 대부분 5년 이하로 되어 있어 당행의 RP매입증거금률 조정이 장단기채 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주택금융공사 MBS의 최하 신용등급을 설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하 신용등급 설정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해당되는 주택금융공사 MBS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데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주택금융공사 MBS의 증거금률 수준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ECB, 영국, 스웨덴 등은 ABS나 MBS의국채대비 증거금률 수준의 차등화폭이 훨씬 크고 이는 그만큼 위험을 더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제수준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MBS와 국채와의 증거금률 차이가 적정한 지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택금융공사 MBS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와 당행이 출자한 공적기관인만큼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위원은 '공개시장조작'이라는 용어를 포함해서 금통위와 관련된 규정들의 용어 및 체제 등을 정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공개시장조작'이라는 용어가 한국학술단체총연

합회의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에 따라 재정경제정책 부문의 전문용어로 등록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규정체제 및 용어 정비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조작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공개시장조작규정」개정(안)(생략)